

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 안내문

< 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사업 >

농어업인의 결혼난 해소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, 젊은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으로 생동감 있는 농촌 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

□ 지원내용

- 지원대상 : 영동군내에 거주하며 영농경력 1년 이상의 만20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농어업인
※ 남녀 구분 없이 신청 가능
- 지원액 : 3백만원(1가정, 1회 지원)
 - 단, 부부농어업인인 경우 부부 중 1명만 지원가능
 - 조례개정 이전 2017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농어업인도 신청가능

□ 신청·접수

- 기 간 : 결혼 후 혼인신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후 6개월 이내 신청(단, 국제결혼의 경우 해당 결혼이주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발급일 또는 건강보험증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)
- 신청방법 : 거주지 읍·면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·면사무소에 제출(농지원부, 가족관계등록부, 혼인관계증명서(또는 외국인등록증), 건강보험증 첨부)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농정과(043-740-3455) 또는 거주지 읍·면사무소(농정담당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